

● 제32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988)  
**검 토 보 고 서**

2023. 9.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운영회 의원 발의】

의안번호 988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운영회 의원(찬성 30명)

나. 발의일자 : 2023년 08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08월 21일

#### 2. 제안이유

- 최근 비대면 마약거래가 지능적으로 발전하면서 SNS 사용이 활발한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2017년 11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 수가 2021년 450명으로 4배 넘게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한 예방책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10대 청소년의 마약중독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3. 8. 24.~ 2023. 8. 28.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 율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 988)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10대 마약사범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한 예방책은 부족한 실정이라,

이에 시장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면서,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3조의2(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가. 개정안의 취지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의 필요성) 최근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교육의 확대·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관련 매체의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성 향상, 그리고 10대 마약 사범 증가 관련 여론 >

발표기관	보도일시	보도내용
연합뉴스1)	2023.0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천387명 중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천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었다.</li> <li>•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탓이 크다.</li> <li>• 실제로 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중학생 A(14)양이 텔레그램으로 산 필로폰을 동급생 2명과 함께 나눠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다.</li> </ul>
MBC뉴스2)	2023.0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며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식욕억제제를 되팔거나 구매한 혐의로 총 102명을 검거했습니다.</li> <li>• 이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트위터를 이용해 불법 거래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li> <li>• 이들 중 대다수는 10대로, "살을 빼기 위해 구매했다", "용돈을 벌기 위해 남은 약을 팔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li> </ul>
중앙일보3)	2023.0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용인시의 고등학교 1학년생 A·B(15)군은 교내에서 '경찰서 단골 손님'으로 불린다.</li> <li>• 합성대마를 손에 넣은 A·B군은 직접 흡입했고, C씨 등 2명의 지시 아래 되팔아 돈벌이까지 하려 했다. 마약류 소매상으로 나선 것이다. 고객으로 삼은 주요 타깃은 A·B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었다.</li> <li>• 두 고교생은 일단 한 번 중독시키면 그다음부터는 판촉 활동을 하지 않아도 구매를 이어가는 게 마약류 소비자의 특성이라는 점을 노렸다.</li> <li>•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li> </ul>

- 이처럼 언론보도를 통해 최근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여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이번 윤영희 의원(의안번호 : 988)의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의 국가 등의 책임 명문화) 지난 2023년 8월 16일 일부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2024년 8월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법 제2조의2제2항)” 하며,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법 제2조의5제1항).
- 이번 윤영희 의원(의안번호 : 988)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위법인 「마약류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

1) 자료: 송정은, 이미령, 2023.04.23., “구하기가 너무 쉽다...10대 마약사범 4년새 3배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2046000004>

2) 자료: 제은효, 2023.07.28., “환각 작용 식욕억제제 SNS로 불법 거래한 102명 검거·대다수 10대”, 출처 :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609\\_36126.html](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609_36126.html)

3) 자료: 김민중, 2023.08.14., “한 번 중독 시키면 알아서 산다...경찰서 단골 된 고1 마약상”, 출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4560#home>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전문개정 2023. 8. 16.][시행 2024. 8. 9.]

제2조의5(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시행 2024. 8. 9.]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 윤영희 의원(의안번호 : 988)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한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 3 종합의견

- 최근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여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중독예방교육의 확대·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윤영희 의원(의안번호 : 988)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위법인 「마약류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해 보이며, ‘주요 내용’상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겠음.

문 의 처

우현재 입법조사관 (02-2180-8155)